



제 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 및 위원 자격기준 신설 >

■ 이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71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 및 위원 자격기준 신설(안 제8조) ..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기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2. 30.

다. 회 부 일 : 2025.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공공디자인위원회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 등과 전문가 위촉에 관한 협의가 없고 전문가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위촉 시 마다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는지 알 수가 없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 위촉 시 추진협의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위촉 위원의 자격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디자인에 관한 실질적인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 및 위원 자격 기준 신설(안 제8조)

개정안은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 위촉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진협의체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촉 위원의 자격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u><신설></u>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추진협의체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구성·운영 및 위촉 위원의 자격기준----- -----.

현행법 제7조1)는 공공디자인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을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2)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자료: 참고 1).

위원회는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의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 정책 및 관련 법률·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나, 현행 법령에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이나 추천·협의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8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절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위원 위촉 과정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위원회 구성 시 공공디자인 정책과 실무에 대한 전문성, 현장성 및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곤란하며, 위원 위촉 기준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특히 공공디자인은 건축, 도시계획, 경관, 산업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는 영역으로, 위원회에는 폭넓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사람이 균형 있게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 제15조³⁾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 추진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제15조(추진협의체)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함)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 제6조4)는 추진협의체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5).

이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갈등 조정을 도모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 수용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추진협의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위원 위촉에 대하여 현장 및 전문 단체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또한, 위촉 위원의 자격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① 국가기관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5) 「2023년 공공디자인 실태조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3.11., p161)에 따르면, 24개 지자체에서 추진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음(출처:<https://www.kcdf.or.kr/brd/board/334/L/menu/256?brdType=R&thisPage=2&bbIdx=7615&brdCodeValue=&searchField=titlecontent&searchText=%EB%94%94%EC%9E%90%EC%9D%B8>).

함으로써 학력·경력·실무 경험 등 공공디자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이를 보완·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위촉 시 유관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견 청취를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객관성·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타 입법례(자료: 참고 2)를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 시 유관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아울러, 의견 청취의 대상이 되는 유관단체의 규모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규모를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84

□ **위원회 개요**(법 제8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등)

-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위원 : ▲(정부)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차관급 공무원 (9명) ▲(민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 문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 **(임기)**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위촉위원)
-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대면심의 원칙이나,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급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

◆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위원회 회의) ⑤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급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주요기능)**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 사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기수	회의일자	방식	안건명
1기 (‘18.4월~ ‘20.4월)	2018.4.25.	대면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제1차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2018~2022)심의
	2018.12.21.	대면	2019년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 심의 차세대 여권 디자인 확정 및 적용 계획 보고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 확정 보고
	2020.3.27.~4.3.	서면	2020년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 심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 보고
2기 (‘20.7월~ ‘22.7월)	2021.4.2~9.	서면	2021년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 심의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보고
	2021.12.22.~27.	서면	2020년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22년 공공디자인 엑스포 추진계획 보고 공공디자인 부처 컨설팅 추진계획 보고
	2022.3.8.~15.	서면	2022년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 심의 제2차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2023-2027) 수립 추진 보고

법률명	조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만화진흥위원회) ①~③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생략)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만화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만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만화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만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만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6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①~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공예 및 공예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⑥ (생략)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① 법 제6조에 따른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공예문화산업 관련 학문을 전공한 이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법률명	조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공예문화산업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